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가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빈칸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20 다산콜재단 /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I.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지 기준					
비상 연락망	성명	연락처			
	관계	신청인의	□부 □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기타()		

II. 신청 정보

월저축액	* 저축액은 약정 시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해 주세요 (본인납입금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 매칭)				
	□ 10만원 (+15만원)	□ 15만원 (+15만원)	□ 20만원 (+15만원)		
저축목적	* 아래 해당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 주세요				
	□ 교육비	□ 의료비	□ 주거비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 창업 및 직업훈련비	□ 자동차 구입비		
	□ 결혼준비자금	□ 신탁	□ 장기저축		
인지경로	* 어디에서 이룸통장을 알게 되셨나요? (해당되는 모든 칸에 √해 주세요)				
	□ 인터넷	□ 유튜브	□ 엘리베이터	□ 구청,동사무소	□ 복지시설 □ 학교 □ 버스 □ 지하철 □ 기타()
장애유형	* 장애인증명서에 명시된 장애유형에 √해 주세요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뇌전증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상이등급	
주거형태	*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 자가	□ 전·월세	□ 무상거주	□ 시설거주	□ 기타
혼인상태	□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기타

III. 가족 인적사항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미혼(이혼) 시 부, 모/기혼 시 배우자, 자녀 필수 포함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					
모					
배우자					

IV. 제출서류 자가 점검

* 아래 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해 주세요.(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발급(작성)대상	제출여부
필수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인, 가구원	<input type="checkbox"/>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해당자 제출	• 부채증명원	신청인, 부, 모,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 가족해체사유서	부, 모,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 위임장 1부	신청인, 위임인	<input type="checkbox"/>

V. (선택) 희망 사례관리기관 수요조사

* 이룸통장 최종 선정 시 배정을 희망하는 사례관리기관을 3순위까지 기재해 주세요.
(단, 기관별 적정 관리인원 고려, 타기관 임의 배정될 수 있음. 임의 배정 후 이용에 어려움 있는 경우 이전 가능)

[참고] 이룸통장 사례관리기관 운영 현황

기관명	발급(작성)대상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강남구 광평로60길 22 (수서동), 강남세움센터 4층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4 더챔버오피스텔 201호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90 (자양동), 제일빌딩 5층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63길 43 (창동), 도봉구청행정지원센터 B101호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8층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합정동), 마포함께이룸센터 111호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길 66-18 (양재동), 광산빌딩 2층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성동구 상원길 36 (성수동1가), KTP 사옥 5층
영등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 105 (당산동1가), 어울림센터 4층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147 (응암동), 미주빌딩 403호

1순위	2순위	3순위

1.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2.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4. 최종 선정여부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약정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후 지역별 사례관리기관과 연락관계를 가지며, 금융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6. 향후 적립금 수령 시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국가서비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장애인 연금 감액·탈락 등)

위와 같이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가 미성년자 등의 경우 필수)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및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이름, 연락처, 주소, 비상연락처(이름, 연락처, 관계), 혼인상태, 가족 인적사항(이름, 관계), 소득 및 재산정보, 주거형태, 신용정보, 상담 내용	본인식별, 이룸통장 참가자 선정, 이룸통장 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 통계분석, 연구조사	사업종료 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룸통장 사업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이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 분	동의 여부
본 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대리인(해당자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항 목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기관, 신한은행, 연구조사기관, 유사 자산형성사업 운영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이룸통장 사업 운영 (참가자 선정, 서비스 제공, 사업 통계분석, 연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비상연락처(이름, 연락처, 관계), 혼인상태, 가족 인적사항(이름, 관계), 소득 및 재산정보, 주거형태, 신용정보, 상담 내용 • 민감정보 장애유형 • 고유식별정보 본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종료 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룸통장 사업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구 분	동의 여부
본 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대리인(해당자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 기간
이룸통장 사업 운영, 이룸통장 참여이력 관리 (중복수급 방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의 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사업종료 시까지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소득·재산조사에 동의하며,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6년 5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가 미성년자 등의 경우 필수)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구청장 및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 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 · 국세 · 지방세, 토지 · 건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출입국 · 병무 · 보훈급여 ·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
(√ 체크)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택적 동의

(아래 선택적 동의 항목은 각각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 미동의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 체크)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부모급여	4.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장애인연금	5.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서비스연계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8.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유의 사항		확인 (√ 체크)
공통	<p>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
장애인연금	<p>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p>	
서비스연계	<p>6.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p> <p>7. 요금감면(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p>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p>8.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9.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거부 의사가 없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제2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²⁾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서식 4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7.4.>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본인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제 공을 동의함 ^{1),2)} (한글정자 서명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³⁾ (한글정자 서명또는 무인·인감)
본인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부양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사실 확인 내용

• 가족관계해체 시점 :

• 가족관계해체 사유 :

• 신청인의 현재생활상태 :

부양기피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향후, 상기신고사실이 허위,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분(통장사업 탈락, 매칭비용 환수)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6호】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름통장] 신규가입 신청접수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가입신청자 본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름통장] 신규가입 신청접수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위임받은 사람(접수 대리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가입신청자와의 관계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 위임받은 사람의 준비물 :**

- 위임하는 사람(가입신청자)의 ① 신분증, ②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본 양식)
- 위임받은 사람(접수 대리인)의 ③ 신분증

서울특별시 귀중